인증서 재발급 절차

1. 적용범위

- 기 발급된 인증서의 내용변경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뢰성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 인증서 원본은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본회수 후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2. 인증서 재발급 절차

-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증서 재발급 절차

가. 재발급(변경) 신청서 접수

▶ [첨부 1]의 “신뢰성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뢰성인증센터에 접수한다.

▶ 재발급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증빙자료

재발급 사유	변경사항 발생 (대표자, 업체명, 주소 등)	분실
증빙 자료	✓ 기 발급 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 변경사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인증서 재발급 관련 자료

나. 검토 및 재발급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신뢰성인증서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재발급한다.

▶ 인증서 재발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효기간

❖ 재발급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표 2]와 같다.

표 2. 재발급 인증서의 유효기간

No.	유효기간		재발급 여부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적용내용
	표기	기간		
가)	표기	만료	불가 (재인증)	-
나)		유효	가능	기 발급 인증서의 유효기간
다)	미표기	만료*	불가 (재인증)	-
라)		유효	가능	인증서 취득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 미표기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여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의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다면 기존 유효기간을 재발급 인증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여부를 판단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인증서의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2) 평가기준 번호

❖ 재발급 인증서에 표기되는 평가기준 번호는 기 발급된 인증서에 적용된 평가기준 번호를 표기한다.

3. 수수료

▪ 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50,000원이 발생한다.

가. 계좌정보

▶ SC은행 632-20-202612

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인증센터로 따로 요청한다.

▶ Tel: (031) 229-8499

▶ E-mail: krc@koras-krc.or.kr

[첨부 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인증품목명			
인증번호		인증일	
평가번호		유효기간	
업체명	(한)	대표자	(한)
	(영)		(영)
소재지			
평가기관			
재발급 (변경) 내용 / 사유			
변경 사항			
기존		변경	
제출 자료			
1) 사업자등록증. 3) 변경사항 증빙자료.		2) 인증서 원본. (신청서 제출시 사본 첨부) 4) 기타.	

한국신뢰성인증센터 운영규정 제26조 및 업무세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뢰성인증센터장 귀하